

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2. 14] [국토교통부령 제792호, 2020. 12. 14, 일부개정]

- 국토교통부(기술정책과-경력관리, 교육) 044-201-3555
-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-건설사고) 044-201-3562, 3563
-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-건설안전, 별점, 점검) 044-201-3586, 4593
- 국토교통부(기술정책과-건설신기술) 044-201-3558
- 국토교통부(기술정책과-환경관리비) 044-201-3559
-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-품질관리) 044-201-3580, 3579
- 국토교통부(기술기준과-설계제도) 044-201-3567
- 국토교통부(건설안전과-건설사업관리, 안전관리수준평가) 044-201-3582, 4592
- 국토교통부(기술정책과-기타) 044-201-3554

제59조(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)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12. 14.>

1.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 2.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
 3.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 4.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(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)·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·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
-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·측정·평가하여 보수·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”이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9 제2호나목1) 또는 2)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. <신설 2020. 12. 14.>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0. 12. 14.>

부칙 <제792호, 2020. 12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)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을 말한다)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.